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권덕철<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경우, 해당 부채를 평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단서가 개정(개정 2019.12.3., 시행 2022.7.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 1)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 소정 요건(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각호 >

-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일 것
- 2호. 대출일이 취득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3호.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관계일 것

나. 적용대상 주택 기준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2항)

-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평가한 금

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의 100분의 3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함

다. 대출금액의 평가 방법 규정 (개정령안 제42조의2제3항)

-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금액에 「지방세법」상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
-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금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함

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 동의 규정 및 그 외 세부 사항에 관한 고시 위임(개정령안 제42조의2제4항, 제5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따른 소득”을 “따른 소득.”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2항 중 “산정방법”을 “범위 및 산정방법”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무주택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에 해당할 것
2. 대출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1세대 1주택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

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전입일(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나. 1세대 무주택자: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변경(다른 주택으로의 이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3.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차인(1세대 무주택자인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일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 1주택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주택 기준시가(이하 “주택가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 1세대 무주택자: 대출을 받아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주택가액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세대 1주택자: 제2항제1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금액의 합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평가금액의 합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으로서 별표4제1호나목1)의 금액

나. 별표4제1의2호다목1)의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

2. 1세대 무주택자: 제2항제2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된 금액의 합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가금액의 합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확인에 필요한 인적 사항 관련 자료

2. 대출기관등 명칭, 대출 일자·종류·용도·기한, 대출잔액 등 대출 관련 자료

3. 담보 물건 종류·소유자·수량·소재지, 관계 등 담보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그 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제1의2호에 따른 기본공제액과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금액의 합”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과세표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하 “재산과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평가한 금액”을 “평가한 금액(이하 “임차과표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2) 표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산의 기본공제액은 재산과표금액과 임차과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700만원 이하: 1,350만원

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다. 5,000만원 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재산과표금액만 있는 세대: 500만원
- 2) 임차과표금액만 있는 세대: 1,000만원
- 3) 재산과표금액과 임차과표금액이 모두 있는 세대: 재산과표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재산과표금액과 임차과표금액의 합

(2) 500만원 이상: 500만원과 임차과표금액의 합

별표 4 제3호의 등급 1의 재산금액(만원)란 중 “450”을 “1 초과 ~ 45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대출금액의 제외에 관한 특례) 공단은 제1조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공제는 2022년 9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22년 7월 및 8월에 부과한 보험료에 해당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제41조(소득월액) ① -----<br>-----<br>-----<br>-----.<br>-----.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u>따른 소득 &lt;단서 신설&gt;</u>                                                    | 5. -----<br>----- <u>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u>산정방법</u>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br>---- <u>범위 및 산정방법</u> -----<br>-----.                                                                                                                  |
| ③ ~ ⑤ (생    략)<br><u>&lt;신    설&gt;</u>                                                               | ③ ~ ⑤ (현행과 같음)<br><u>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 |

하는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  
가입자(이하 “1세대 무주택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을 받  
은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  
출 등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대출에 해당할  
것

2. 대출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1세대 1주택자: 해당 주택  
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또  
는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전  
입일(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

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나. 1세대 무주택자: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변경(다른 주택으로의 이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3. 주택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차인(1세대 무주택자인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일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 1주택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주택 기준시가(이하 “주택가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 1세대 무주택자 : 대출을 받아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주택가액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세대 1주택자: 제2항제1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

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금액의 합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평가금액의 합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으로서 별표4제1호나목 1)의 금액

나. 별표4제1의2호다목1)의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

2. 1세대 무주택자: 제2항제2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된 금액의 합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가 금액의 합으로 한다.

|                                    |                                                                                                                                                                                                                                                                                                                                                                                                                                                                                                                                           |
|------------------------------------|-------------------------------------------------------------------------------------------------------------------------------------------------------------------------------------------------------------------------------------------------------------------------------------------------------------------------------------------------------------------------------------------------------------------------------------------------------------------------------------------------------------------------------------------|
| <p><u>제42조의2 ~ 제42조의6</u> (생략)</p> | <p><u>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지역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확인에 필요한 인적 사항 관련 자료</u></li> <li><u>2. 대출기관등 명칭, 대출 일자·종류·용도·기한, 대출잔액 등 대출 관련 자료</u></li> <li><u>3. 담보 물건 종류·소유자·수량·소재지, 관계 등 담보 현황에 관한 자료</u></li> <li><u>4.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u></li> </ol> <p><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그 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u>제42조의3 ~ 제42조의7</u> (현행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와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2702 |